

보도 일시	2022.4.21.(목) 조간 2022.4.20.(수) 11:00	배포 일시	2022.4.20.(수) 06:00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원 (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이기채 (044-200-5616)

양식수산물 입식신고는 필수입니다

- 해수부, 지자체 등과 함께 봄철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 4.21(목)~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주요 양식품종의 본격적인 입식* 시기를 맞이하여 4월 21일(목)부터 일선 지자체와 합동으로 양식장 입식 신고 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치어 또는 치패를 양식장으로 옮겨와서 키우는 것으로 수산물 양성의 첫 단계

정부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통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들은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일체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실제로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입식 신고를 독려하고 있으며, 광어, 우럭, 참돔 등 주요 품종의 입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봄철에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4월 21일(목)부터 한달간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수협, 생산자단체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도 운영하고, 현장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입식신고 이행율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 기한을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하지만,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관련 규정

- (연혁) 입식·출하신고 의무는 '06.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어업인들의 허위·과대 신고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07.9월부터 신고 기한을 정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토록 개정함(국가청렴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 이후,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 신고 기한을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토록 한 것을 20일 이내로 개정('21.6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대통령령)>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②(생 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식업(해조류 양식어업은 제외한다)의 피해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 수산종자구입·생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류 등(패류·수산종자의 입식 및 출하·판매 신고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1. 입식 신고 : 입식할 때마다 입식일로부터 20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해양수산부 예규)>

제7조(피해정밀조사 보고등) ①~④ (생 략)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시설한 양식물의 경우
2. 기준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식·출하·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해 발생시 복구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여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입식신고율 향상 제고

□ 관련 규정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안부 대통령령)
-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해양수산부 예규)

□ 입식신고 개요

- (신고기간) 입식 후 20일 이내 읍·면·동에 서류 제출
 - 신고 이행율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입식신고소(연중) 및 특별 신고기간(6·11월) 운영
- (제출서류) 신청서, 허가장, 사진, 매매전표, 종자구입(생산) 서류
 - ※ '21년말 전국 입식신고 현황 : (대상) 8,244개소 → (신고) 4,955개소(신고율 60%)

□ 운영 계획

- 찾아가는 입식신고소(연중) 및 특별 신고기간(6·11월) 운영
 - (운영주체) 현장대응반 구성(도·시군, 수협 및 생산자단체)
 - (운영방법) 입식신고가 필요한 현장 방문으로 신고서 접수 및 홍보 병행
- ① (찾아가는 입식신고소)
 - 지역 특수성 및 입식신고 미이행률이 높은 읍면동 중심으로 순회일정 사전 공지
 - 품목별 입식시기를 고려하여 미신고 대상어가 최소 1회 이상 순회방문
- ② (특별 신고기간 운영)
 - 홍보 플래카드 게시, 입식신고 대상자에게 공문 및 SNS 발송, 어촌계 방송 활용 홍보
- 품목별 입식신고 및 자연재해 피해조사 매뉴얼 교육(4월~6월)
 - (운영주체) 국립수산물과학원(4월), 해양수산인재개발원(6월)
 - (운영방법) 수산재해 실무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 포럼** 개최
 - * 입식신고 및 재난업무 관련 공무원, 양식어업인 등 대상
 - ** 이상수온, 적조 등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강화, 기관 간 재해업무 세분화 및 연결강화, 피해조사 및 복구관련 업무개선 토의 등

○ 입식신고 집중 홍보 강화

- (운영주체) 도·시군, 수협 및 생산자단체
- (홍보방법) 품목별 입식시기*에 따라 입식신고 홍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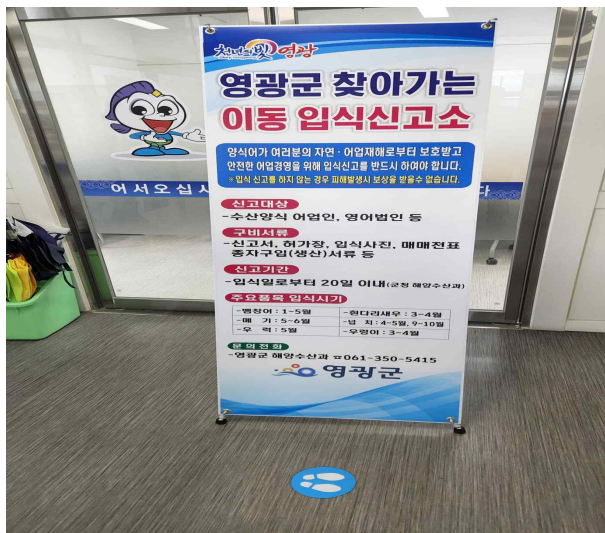
* 입식시기 : ^{4-5월, 9-10월}넙치(광어), ^{5월}우럭, ^{11월, 3-4월}전복, ^{6월}굴, ^{1월}멍게, ^{1-5월}뱀장어, ^{5-6월}메기, ^{3-4월}흰다리새우

** 입식신고 캠페인 실시(연 2회), 주기적 어촌계 협조요청(공문·SMS 발송, 현장 방문 지도, 미이행자 신고 독려), 시장·군수 서한문 발송

□ 행정 사항

-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시군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2. 2. 4.까지
- 현장방문, SMS, 언론홍보 등 홍보계획 포함
- * 입식신고소 운영 및 신고율 제고를 위한 실태점검 추진 예정(7월~8월)
-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홍보 및 실적 제출 : 상·하반기
- 이동 입식신고소 운영 및 홍보 강화 : '22. 4 ~ 6월, 10 ~ 11월

□ 사진 대지



입식신고소 안내 홍보



입식신고 플래카드